

1. 개정이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연장근거 마련(안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규정 마련(제18조)

비관리청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기한”을 각각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6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의 <u>준공기한</u> 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 ----- ----- <u>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u> -----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u>준공기한</u> 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② ----- ----- <u>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u> ----- ----- -----.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 ----- ----- ----- ----- -----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법 제18조 단서에 따
라 비관리청의 토지·항만시설
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
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항만시
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설>

-----.

② -----

----- 법 제18조제1항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
료 징수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6조제2항
을 준용한다.